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6 - 15호

「**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**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0월 6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자치회관 간 상호 필요한 정보공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자치회관의 운영·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

(안 제 25조 내지 제3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6년 10월 11일**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다음에 “제4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”를 삽입한다.

제25조를 제32조로 하고,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설치)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
제26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·자문한다.

1.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
2.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3.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27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1명, 간사 1명의 임원을 두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28조(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9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개최할 수 있다.

제30조(의견청취 등) ① 회장은 협의회의 협의·자문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.

제31조(운영경비 등)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